

제356회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2월28일(수)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된 안건

- | | |
|---|---|
| 1. 간사 선임의 건 | 1 |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 |
|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 |
|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1 |

(22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7차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선임하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확정 및 의원 정수와 관련하여 정치개혁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교섭단체로 등록됨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간사를 새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관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김관영 위원님을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전에 국민의당 간사가 맡았던 정치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김관영 간사께서 계속하여 맡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2시20분)

○위원장 김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관영 정치개혁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관영 정치개혁소위원장 김관영 위원입니다.

정치개혁소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과 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소위를 개최해서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시·도 의회의원 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총 정수를 조정하였고 이를 3건의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안 3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 지역구 수의 증가와 지역별 인구 증가,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범위 및 선거구 인접원칙을 감안하여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현행 663명에서 27명 증원된 690명으로 하고 그에 따라 선거구역표를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총 정수를 인구 증가를 감안하여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된 292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거구에 등록된 예비후보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표의 증가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현행 13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만 다음번 지방선거를 위한 개정 논의에서는 19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주도 의회의원 정수의 상한을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경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위원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 제가 이야기를 못 들어서 그러는 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와 관련해서 다음번 지방선거를 위한 개정 논의에서는 19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다음 번은……

○김관영 위원 4년 후를……

○심상정 위원 4년 후를 말하는 거예요?

○김관영 위원 예.

○위원장 김재경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상수 위원님.

○안상수 위원 지금 이게 많은 진통 끝에 해서 우리도 다 같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우리 인천 지역은, 정말 여러분도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지 내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인천 지역에서 소위 내 지역구, 내 지역구는 하나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뭐 기준대로 했으니까 좋다 이거야.

그런데 내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을, 보니까 대개 자기 지역들만 챙기고 이런 결과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주광덕 간사하고도 내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마침 주광덕 간사가 일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 나와서 안타까운데, 제가 설명을 해 볼 테니까……

인천에 남동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남동구. 거기는 인구가 53만 2749명이고 그다음에 부평이라는 데가 있어요, 부평구. 53만 1989입니다. 그다음에 인천 서구라는 데가 있어요. 1월 말 현재 기준인데 51만 62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는 그동안에 5명이었었고 부평이 5명, 그리고 서구가 4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남동구는 6명이 되고 부평이 6명이 됐어요. 그런데 서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똑같은 53만 명, 51만 명 이런 건데, 이게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데입니다. 서구, 부평, 남동이라는 데가, 계양구가 좀 빠집니다만.

그런데 비슷한 인구에서 어디는 6명이고 어디는 4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납득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기준을 아까 얼핏 지나가는 말로 들었지만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인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어떤 산식에 산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위원장 김재경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윤관석 위원** 이것은 자당에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냥 설명을 도와 드린다면 이번에 짤 때 공직선거법이기에 때문에 인구의 기준을 행정구의 인구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이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동구·용진·강화 여기까지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전체의 인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의 인구 정수를 주고 그다음에 그 선거구 정수를 주고 그다음에 선거구의 인구 증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부분을 빼지 않는 것은 이미 국회의원 선거구 때 선거구가 조정이란 번 되면서 시의원 숫자를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지 않는 형태를 기준으로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의 행정구 수치의 인구만으로 봐서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인구가 가장 많은 순위를 따져서 그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무슨 규정이나 법을 그냥 여기다 끼워 맞추려고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참고로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여기 아무데도 관계가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님이 남동구입니다. 처음부터 주 간사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도 그 양반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잘 협상을 해라’…… 여기 남동구는 5명이고 서구가 4명인데 한 사람이 늘면 서구로 가야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윤관석 위원** 아니, 선거구별 인구가 서구보다 남동구…… 부평갑이 제일 많고요, 남동구들이 그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구갑이 세 번째예요. 그런데 전체 정수를 늘릴 때 전국 정수를 많이 늘리면 세 번째까지 가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세 당 간의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선거구별 인구 정수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쪽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안상수 위원** 2명씩 차이가 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윤관석 위원** 원래 1명 차이 났었지 않습니까? 원래 1명 차이 났었잖아요.

○**안상수 위원** 1명 차이 난 건데 1명 차이 났으

면 1명 차이 난 데를 채워 주는 게 맞는 것이지 같은 51만 6000, 53만 1000, 53만 2000인데 이것을…… 그리고 사실은……

○**윤관석 위원** 그것은 행정구 인구이고 지금 우리가 전국의 다른 분들에게도 적용한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기준으로 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김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경** 김관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관석 위원** 그렇게 특정한 쪽을 거론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은 같은 특위 위원으로서 적절치 않고요.

○**김관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위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표성, 인구 상한과 하한을 고려한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고 그런 문제들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반영하고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다 수용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그 와중에서 어쨌든지 간에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위원님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특히 안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체적으로 인구를 보면 인구는 비슷한데 어떤 데는 광역의원이 6명이고 어떤 데는 4명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것을 인천 전체를 놓고 보고 각 구별로 전체 인구를 고려한 그런 접근법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놓고 각 선거구 내에서 각 광역의원이 대표하는 인구수를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쪽 인천시 전체적으로 놓고 본 다음에 거기서 광역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숫자대로 이게 더 증가하는 그런 방식의 접근법들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지만 어느 선거구는 사람이 몰려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안을 짜와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쪽 자료를 보면서 데이터에 근거해서 일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지 저희 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지만 원내 지도부 또 소위원회 간사들이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어렵게 결론에 이르렀는데, 좀 아쉽지만 존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경** 예.

○**안상수 위원** 나도 이것 처음부터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처음에 몇 개, 17개인가 얼마고, 우리가 무슨 7개인가 뭔가 해 가지고 거기서 좀 갭이 많다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당인데, 어떻게 여당이 거꾸로 더 많이 늘리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서로서로 여기저기서 자기 관련되는 데서 해 가지고 27명이나 늘려 놓고, 늘려 놓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이게 나로서는……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니라니까요. 내 지역은 하나가 줄었어요. 줄었는데 수용한다 이거야. 규정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인천 전체로 봐서 이것을 무슨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혹시 선관위 총장님,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설명한 것들 내가 전부 다 고발할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소위 논의과정에서 저희 선관위에서 직접적으로 확정에 깊은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안상수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지금 얘기한 것을 해석해 달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보고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내 해석으로는 난 안 가서 그래. 그런 설명입니다.

○**나경원 위원** 구체적으로 수치로 설명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안상수 위원** 위원장님이 총장을 가르쳐 줘 가지고 총장이 나한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김관영 위원** 과장님이 뒤에서 할 수 있는가?

○**윤관석 위원** 다 규정대로가 아니라니, 다 규정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안상수 위원** 나는 규정을 잘 모르니까 선관위에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위원장 김재경** 나경원 위원님 발언하시고, 답

변 준비하는 동안에 발언하십시오.

○**나경원 위원** 선관위에서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증원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표의 등가성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옆에서 수치만 봐도 부평과 남동은 53만 명 정도 되는데 6명이나 시의원이 탄생한다면 결국 한 8만 5000명이예요. 그리고 서구는 51만 6000에 4명이라면 한 13만 명이예요.

그러면 지금 논리는 원래 시의원들이 죽 있었는데 인천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석을 늘려 주겠다 이런 식의 통으로 합의를 하고 그래서 시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늘렸다고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수치로 설명을 해 주세요, 수치로.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어떻게 된 것인지 대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존경하는 위원님, 그런데……

○**나경원 위원** 수치로 설명해 주세요, 수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대년** 그런데 지방의원 선거구 확정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관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경** 박병석 위원님 발언하실 차례인데요.

○**안상수 위원** 참고로……

○**박병석 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었는데 먼저 하시겠어요?

○**안상수 위원** 팩트만 좀 알려 주려고. 나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솔직히 약간 열 받아 가지고…… 내가 굉장히 침착한 사람인데.

참고로 남동이 국회의원이 갑·을이예요. 부평도 갑·을이야. 서구도 갑·을이야. 국회의원이 둘 다 똑같이 2명씩이예요. 그런데 시의원이 어디는 여섯이고 어디는 여섯이고 어디는 넷이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뭐라고 국민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할 거냐 이거야.

○**위원장 김재경** 발언하세요.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여기서 직접 어떤 원칙을 세우기가 시간이 촉박한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의원

정수에 관해서는 의원들이 결정을 하지만 선거구의 확정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아닌 제3자에게 맡겨서 공정하게 하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때마다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또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자꾸 허용됨으로써 논란이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선거구 확정 문제는 앞으로 정말 우리가 법으로 결정을 하든지 외부의 객관적인 기관한테 맡기는 것이 좋고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앞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관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오해하신 것……

○**위원장 김재경** 말씀하세요.

○**윤관석 위원** 지금 자꾸 본인들의 판단을 그렇게 미리 하시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걸 제 설명이 아니라 행안부의 기준이에요. 그건 양당에 공통으로 적용된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인천의 남동구만 된 게 아니라 모든 곳 전국에 다 공통 기준한 것이, 자꾸 행정구 인구를 얘기하는데 국회의원 선거구에 기준을 한 겁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그렇게 했을 때 각 지역의 주민 수 그다음에 시도 의원의 1인당 주민 수 대표하는 숫자를 보면, 안상수 위원님께서 자꾸만 전체 행정구 수를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별로 시도 의원이 1인당 주민 수 담당하는 숫자를 보면 인천에서 부평구같이 제일 많습니다, 14만 1834명. 그다음에 남동구율이 이어서 13만 5893명 그다음에 서구가 13만 3436명. 그런데 서구값은 12만 3109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순위별로 전체 정수를 배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고 반대 기준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6명·4명 문제는 이미 5명·4명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전에 이미 2014년도 때 만들어진 선거구의 배정들이에요, 또는 그 이전 것. 그러니까 애초부터의 문제를 갖다가 여기서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구 확정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인구수가 선거구 기준이라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민대표 수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제가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말

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부 순서고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수치라는 것이고 이 기준은 자유한국당에서 늘어나는 선거구 기준하고 다 똑같습니다. 별도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갖다가 정태욱 간사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나경원 위원** 인천은 왜 늘려 준 거예요? 국회의원 수가 늘어났나요?

○**정태욱 위원** 국회의원 자체 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종구 위원** 국회의원 늘어나지를 았았습니까?

○**윤관석 위원** 국회의원 늘어났잖아요. 저쪽 연수구에 을 생겼잖아요.

○**이종구 위원** 연수구에 늘어났는데 왜 여기다 넣느냐고. 말이 안 되잖아.

○**안상수 위원** 내용을 다들 잘 모르시니까……

○**박완주 위원** 저도 잠깐 발언을……

○**위원장 김재경** 순서대로 하십시오.

정태욱 위원님.

○**정태욱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오늘 나도 오후 4시부터 들어가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한 지역구에 인구수를 따져 가지고 몇 명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개개 한 건건에 대해서 늘리고 줄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윤관석 위원님 지역이 아니라…… 거기는 인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배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 안상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천에 얼마로 되어 가지고 톱다운 방식으로 한다 하면 되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협의할 때는 그런 게 전혀 논의되지는 않은 상태고, 이미 제가 간사한테 받을 때는 논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이걸 제도개선으로 가야 될 문제지, 톱다운 방식으로 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생각합니다.

○**안상수 위원** 그건 좋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할게요.

○박완주 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안상수 위원 뭘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팩트만 몇 가지 더 정리를 하고 말씀하세요.

○윤관석 위원 골고루 발언하세요.

○안상수 위원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남동이 53만, 부평이 53만, 서구가 51만 6000.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6개, 6개, 4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3개 지역이 다 갑·을, 갑·을, 갑·을, 국회의원이 둘씩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런 차이가 만들어졌는지 나는 뭐,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박완주 위원님.

○박완주 위원 자, 이런 겁니다.

아시다시피 1안, 2안, 3안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1안은 말 그대로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시군구 곱하기 2, 만약에 갑·을·병 있으면 그 숫자만큼. 예를 들어 충남으로 얘기하면 15개 시군 더하기—왜냐하면 천안에 갑·을·병 2개가 있고 아산 갑·을—3을 더합니다. 그러면 18 곱하기 2 해 갖고 36석이 정수예요.

이건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3안은 뭘 주장했느냐 하면 국회의원이 2석이 늘었는데 충남은 0을 만들어 줍니다. 금산 하나 줄이고 천안 하나 늘려서 0을 만들어요.

그래서 소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안으로 하면 영남이 6석이 줍니다. 전남이 7석이 줄고요. 이렇게 줄여 나가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못 줄이면 행정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만큼에 대해서, 이것도 합법입니다. ±14%까지 숫자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최대 5석을 늘려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조정을 하는데 충남은 충남 숫자만 갖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남보다 사실은 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광역의원이 7석이 적어요.

그래서 3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회의원 늘리는 데는 늘려 주자. 그러면 통상 느낌에 당연히 천안하고 아산이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충남 전체 선거구, 도의원 선거구를 죽, 최저치와 최소치가 있잖아요. 인구 하한선·상한선 보면 첫째가 천안 병·을, 그다음에 서산, 당진, 아산 순서예요.

국회의원이 늘리는 것은 분명하게 아산이 늘었지만 아산을 늘려 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평균치에 의해서 선거구당 제일 높은 데서부터 떨어 줘야

그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안인 거예요, 나머지 1안도 그렇고 2안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2안대로라면 천안…… 저는 사실 그래서 천안 2석 그대로 평균치로 해 가지고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산은 안 늘린 것입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가지고 이 3안을 조정한 것이고, 막판에 제가 듣기로는 원래 26석대로 하면 원안대로 별 문제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1석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칙을 갖고 1안은 정수 그대로, 2안은 인구 변동, 3안은 국회의원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은 전국 평균이 아니라 충남은 충남끼리 합니다. 경북은 경북끼리 하기 때문에 그런 편차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인천에서도 그런 것을 그대로 준용했다, 그런 표를 만든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나경원 위원 충남의 표를……

○박완주 위원 저한테 물어보시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안상수 위원 행안부 누가 나와 있어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입니다.

○안상수 위원 설명해 봐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 윤종인 저희는 지금 제가 실제로 간사회의 때 들어가지는 않아서요 구체적인 과정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의 공직선거법이라든가 헌법상 정해진 법률상 확정 기준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선법에 따르면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서 시·군·자치구 및 국회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판결에 따라서 선거구 인구가 당연 비례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최대 4 대 1의 인구편차 범위 내에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읍면동을 분할해서 타 선거구에 속하도록 획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가급적 인접지역 선거구 구성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 현재 판결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선법에 따르면 최소 시·군·자치구에 시도 의원 최소 1명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상 정해진 확정 기준입니다. 이제 그 기준을

기초로 해서 다양한 안들을 공선법 관련된 소위에서 검토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아까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행안부에서 안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행안부에서 안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조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들었나 모르겠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안 얘기는 아니고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 윤종인** 그런데 저희는 이 확정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선거구와……

○**안상수 위원** 참고자료라도 보냈나 이거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 윤종인** 예, 참고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저희는 만들어 드렸습니다.

○**안상수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안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안이 갔냐고?

○**행정안전부지방자치분권실장 윤종인** 그것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관영 위원** 안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조금만 더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치개혁소위에 직접 들어오셔서 행안부 소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으면 그래도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절반은 그 회의에 직접 들어오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좀 의문이 충분히 생기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소위에서 12명의 위원님들이 충분히 행안부의 소위, 행안부가 이 안을 만들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용 뭔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들을 한번 나름대로 만들어 와 봐라 해서 만들어 온 안이 있고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이렇게 정한 것이고 그 결과를 또 아까 소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 이해가 안 돼.

○**안상수 위원**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무슨 말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이것은 나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국회의원 숫자도 2명씩이고 인구도 비슷하고 그런데 어디는 여섯이고 어디는 넷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요. 내가 인천시장 출신으로서 어디 가도 다 아는 사람들인데 나랑은 이해관계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지역구 좀 챙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은 하나 빠졌다니까. 하나가 빠져서 연수구에 하나가 갔어요, 애초에 연수구에 갑·을이 바뀌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것은 사전에 협의가 잘된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결과가 이렇게 됐다 이거야. 이걸 창피하게 어디 가서 여기서 내가 투표했다 그러고 다니겠느냐고, 이거를. 이거를 내가 찬성을 했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고 다니겠느냐 이거예요.

○**윤관석 위원** 위원님, 이게 갑자기 4개에서 6개가 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5개 아니었습니까, 14년도에? 그다음에 10년도에도 조정이 있었고 2006년도에도 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선거구는 4년 단위로 지방선거 할 때마다 선거구 조정이 있고 그때 적었던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빨리 늘어난 지역이 있고 뒤늦게 늘어난 지역이 있고 인구통계에 따라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4년도에 이미 5개 대 4개였어요. 이번에 기준이 선거구별로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불러 드린 주민 1인당 시의원이 대표하는 숫자 이 순위만큼의 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여기서 늘어난 데가 10개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27개이고 그 지역의 각 지역, 예를 들면 경기도 그다음에 충남, 충북, 경남 그리고 전남, 전북, 전남 광주, 강원 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높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얼핏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다 차이가 나나, 얘기 들어 봐도 그렇게도 들려요. 하지만 국회의원 숫자와 또 인구 숫자가 다르고 이미 그전에 만들어 놓은 의원들의 정수가 있는 것이고 매번 조정하는 것인데 더 늘어나는 데는 다음번에 조정이 되겠지요,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지역의 상한선·하한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특정한 쪽으로 해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원래는 자유당의

간사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동안 했던 주광덕 간사님이 불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정태욱 위원님이 중간에 들어와서 하셔서 잘 모르시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까 부분 설명을 했고 또 소위원장 맡고 계시는 김관영 위원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이해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 김재경 위원님들 잠깐만요.

나 위원님, 잠깐만!

어쨌든 우리가 전체회의를 하면서 서로 간에 질문하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것은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는 동안에 안상수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논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자리를 같이 하면서 서로 이해의 폭을 한번 넓혀 보는 게 어떨까 하는데……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완주 위원 법사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관영 위원 아니, 제가……

○박완주 위원 소위원장님,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김관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아니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김관영 위원 안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 볼게요. 저한테 발언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경 예, 발언하십시오.

○김관영 위원 지금 인천이 국회의원이 1명 늘었지요. 그러면 시도 의원을 2명 늘리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서. 그러면 시도 의원 2명을 도대체 어디서 어느 지역구에 늘릴 것인지를 정할 때 국회의원 늘린 그 지역구에다 바로 늘려 주는 것이 아니고 인천 전체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1인당 시도 의원이 도대체 몇 명의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지를 쭉 순위를 매겨요. 그러면 왜 이걸 매기느냐 하면 주민 1명이 가장, 어떤 데는 예를 들면 부평갑 같은 경우는 14만 1000부터 웅진군 2만 1000까지 순서가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시도 의원이 주민을 가장 많이 대표하는 데부터 해소를 시켜 주는 거예요, 두 자리

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부평갑과 남동을이 해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시도 의원 1명이 주민을 몇 명을 대표하는지에 관한 인구수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작년 10월 30일 맞습니까? 작년 10월 말 기준의 인구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다 내 가지고 전국의 광역시도별로 소위 말하면 1인당 시도 의원이 몇 명의 주민을 대표하는지를 나라비를 다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충청남도에 두 자리를 늘린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2명을 이렇게 해소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부평갑과 남동을이 먼저 해소가 된 것이고, 이렇게 되면 2명~3명 늘어났으니까 여기가 1인당 대표하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다음에 늘어나면 서구갑과 을이 그다음 1순위로 올라온 거예요. 불행하게도 서구갑이 1인당 13만 3000명, 서구을은 12만 3000명을 대표하게, 이제는 1등·2등이 되어 버렸어요, 인천이. 그러니까 만약 다음에 인천에서 뭘 한 자리를 도의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 광역의원을 늘려야 된다면 서구갑과 서구을이 다음에는 1순위·2순위가 된 겁니다.

○박완주 위원 아까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경 박완주 위원님하고 김관영 간사님 설명이 이제 설명은 된 것 같아요. 설명은 된 것 같은데……

○안상수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몇 개, 한 두세 케이스만 쭉 보세요. 다른 시도에 이와 같이 편차가 결과된 게 있으면 쭉 보세요.

○김관영 위원 위원님, 저희가 행자부에서 만드 이 자료를 놓고 보는데요. 모든 시도를 이렇게 1인당 인구수를 위에서부터 나라비를 전부 세워 놓습니다,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다 세워 가지고 예를 들면 광주, 광주도 인구 가장 높은 데 북구을부터 낮은 데까지 죽 세워 놓고 대전, 울산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일단 해 놓고 각 지역에 여기에 1명을 늘릴지 2명을 늘릴지가 정해지면 위에서부터 걷어 내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늘어난 국회의원 숫자에 비례해서 시도 의원들을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연 그 시도 의원은 어느 지역구에서 늘리느냐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해당 도에서 그 순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안상수 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유사한 게 뭔지 알겠지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한번 보자 이것이지. 국회의원 똑같이 다 2명인데 어디는 6명이고 어디는 넷이고 그런 데를 케이스를 한 두 세 가지만 있으면 내가 수용을 할 테니까.

○**박완주 위원** 그 케이스, 우리 충남 천안이 그래요. 제가 도의원 4명이 되고요.

○**위원장 김재경** 잠깐만요. 잠깐 가만있어 보세요.

○**박완주 위원** 발언 주세요.

○**위원장 김재경** 박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안상수 위원님 말씀은 데이터를 확인하시겠다는 이야기니까 안행부에서 다른 시도에서 왜 여기를 늘렸는지를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간의 것을 마구 늘리고 이런 것은 아니나라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안상수 위원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하시겠다 그러니까 다른 도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나경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나경원 위원** 그 전에, 지금 원칙 부분인데요. 제가 아주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위원장님께 여쭙 볼까요.

국회의원 지역구가 는 곳이 여덟 곳이라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여덟 석이 늘었다는 얘기신가요?

○**김관영 위원** 예, 여덟 곳이 늘었지요, 19대에서 20대로.

○**나경원 위원** 여덟 곳, 19대에서 20대. 그러면 일단 여덟 곳 곱하기 2 해서 십육 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시도 의원이. 그런데 함께 27석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16석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시도별로 가서 순위별로 한다는 것은 저도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왜 16석이 아니라 27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국회의원 숫자대로만 한다면 16석이 늘어나야 되는데 왜 27석이 늘어난 것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도별로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관영 위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국회의원은 안 늘었지만 각 도별로 보면 1 대 4의 인구편차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도는 미니멈이 2만 명, 맥시멈이 8만 명 이렇게 상한과 하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은 8만 5000명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선거구는 어쩔 수 없이 늘려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는 이렇게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데까지가 합쳐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지요. 단순히 국회의원만……

○**나경원 위원** 아니, 이것을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지금 저희 국회가 왜 항상 문제이나 하면, 마지막에 보면 지도부들이 합의했다고 그러면서 그냥 대충 하다 보면요 저희가 원칙에 어긋나는 걸 그냥 합의라는 이유로 인정해 주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말로만 다 합의했으니까 동의해 달라고 그러시지 말고, 지금 1 대 4라는 것도 좀 정확하게 어디 어디가 이래서 국회의원 수가 8석이 경기도가 2석, 인천이 1석 이렇게 늘었으니까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도의원이 4명, 인천은 2명이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1 대 4의 원칙에 위반되는 곳이 경기도가 어디가 있고 뭐 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렇게 다 작성해 갖고 오셔서 이걸 설명해 주셔야지, 1 대 4의 원칙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 자료가 있으면 좀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기본 자료는 만들어 왔을 텐데요.

지금 언뜻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27석이라는 것은 1안·2안·3안에도 다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납득이 잘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관영 위원** 아니요, 저희가 3안에 의하면 26석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27석이 된 거니까요. 원칙에 어긋난……

○**김관영 위원** 26석이 늘게 되어 있고, 그것 정치적 합의 과정에 의해서 27석이 최종적으로 됐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특히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님께서 해당 소위 위원으로도 직접

참여를 하시고 아까 소위에도 참여를 해 주셨는데 어떤지 자유한국당에서 직접 협상에 참여하신 정태욱 위원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제가 정리해서 한번 질문을……

○**심상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경** 심상정 위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상수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니까 발언을 먼저 해 보시지요.

○**안상수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만 좀 준비를 하십시오.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국회의원 8명인데, 그래서 16개 늘어났다 이거야. 인천도 1명이 늘어나서 2명 추가한다, 좋다 이거예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역이 하나 줄고 하나 더해서 3명이 신규로 된 꼴인데 결과적으로는 2명만 늘었어요.

자, 그러면 16명이 된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26 혹은 27이 된 사유를, 지금 말씀드린 그 사유에 해당되는 곳이 어딘지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나마도.

○**박완주 위원** 이렇게 하십시오.

1안·2안·3안 상임위에서는 다 와서 보고를 했어요. 통합하는 곳, 아까 얘기했던 자연 증가분 되는 곳, 원래는 1안이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총 4명, 26개가 신설이 되고 22개가 통합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총 늘어난 게 4명인 것이 1안이고요.

2안이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인구 증가,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변동되면서 생기는 인구 증가를 감안했을 때 27개 신설되고 10개가 통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총 17명이 다 이렇게 갖고 왔던 거예요.

3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이 늘어난 데는 늘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만들어진 것이 26명으로, 17명에서 9명 늘어난 26명의 근거에 대해서는 소위에 와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거를 행안부에서……

○**나경원 위원** 거기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박완주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충남 2명이 늘었잖아요. 저도 예를 들게요. 그러면 4명이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2명밖에 안 늘었어요. 대전은 국회의원 1명 늘었는데 아무것도 조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 내에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근거가 왜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경** 자, 그 정도 하시고.

심상정 위원님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심상정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헌정특위 결정을 모든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것을 서로 조금 소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갖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날들 다 놔두고 지금 이 밤중에 여기서부터 원점에서 다시 토론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소수가, 저희는 한 번도 그 소수 논의에 참여해 본 적도 없지만 감수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경**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 위원님.

○**심상정 위원** 그 부분을, 지금 안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의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경** 지금 잘 아시겠지만 2월 임시 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본회의 차수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려면 시간을 맞춰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심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이 오가는 것보다는 한 번 확인을 하고 의혹이 해소되면 되는 대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20인)**

김 경 협	김 관 영	김 상 희	金 成 泰
김 재 경	김 종 민	나 경 원	박 병 석
박 완 주	박 주 민	심 상 정	안 상 수
윤 관 석	이 인 영	이 종 구	이 태 규
정 중 섭	정 춘 숙	정 태 욱	최 인 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한	공	식
전문위원	정	연	호
전문위원	정	성	희
입법심의관	장	지	원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윤	종	인
-------------------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사무총장	김	대	년
------	---	---	---

【보고사항】

○의안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8. 2. 14. 김경진·최도자·오세정·손금주·정동영·황주홍·김수민·윤영일·박지원·장정숙 의원 발의)

2월 19일 회부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8. 2. 19. 권은희·최도자·이찬열·이동섭·김삼화·주승용·김수민·김관영·오세정·김동철 의원 발의)

2월 20일 회부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8. 2. 20. 김광수·조배숙·박지원·천정배·윤영일·박주선·유성엽·장병완·김경진·최경환(평)·김중희·정동영·유동수 의원 발의)

2월 21일 회부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김동철·지상욱·이동섭·김삼화·이찬열·이연주·김중로·권은희·오세정·김수민·박주선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8. 2. 26. 김동철·지상욱·이동섭·김삼화·이찬열·이연주·김중로·권은희·오세정·김수민·박주선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7일 회부됨

○청원 회부

헌법개정에 관한 청원

(2018. 2.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철로부터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제출)

2월 22일 회부됨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에 관한 청원

(2018. 2. 26.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윤순철 외 1인으로부터 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관한 참여연대 청원

(2018. 2. 27.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로부터 김상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2월 27일 회부됨